

알아봅시다!

# 하도금법

하도금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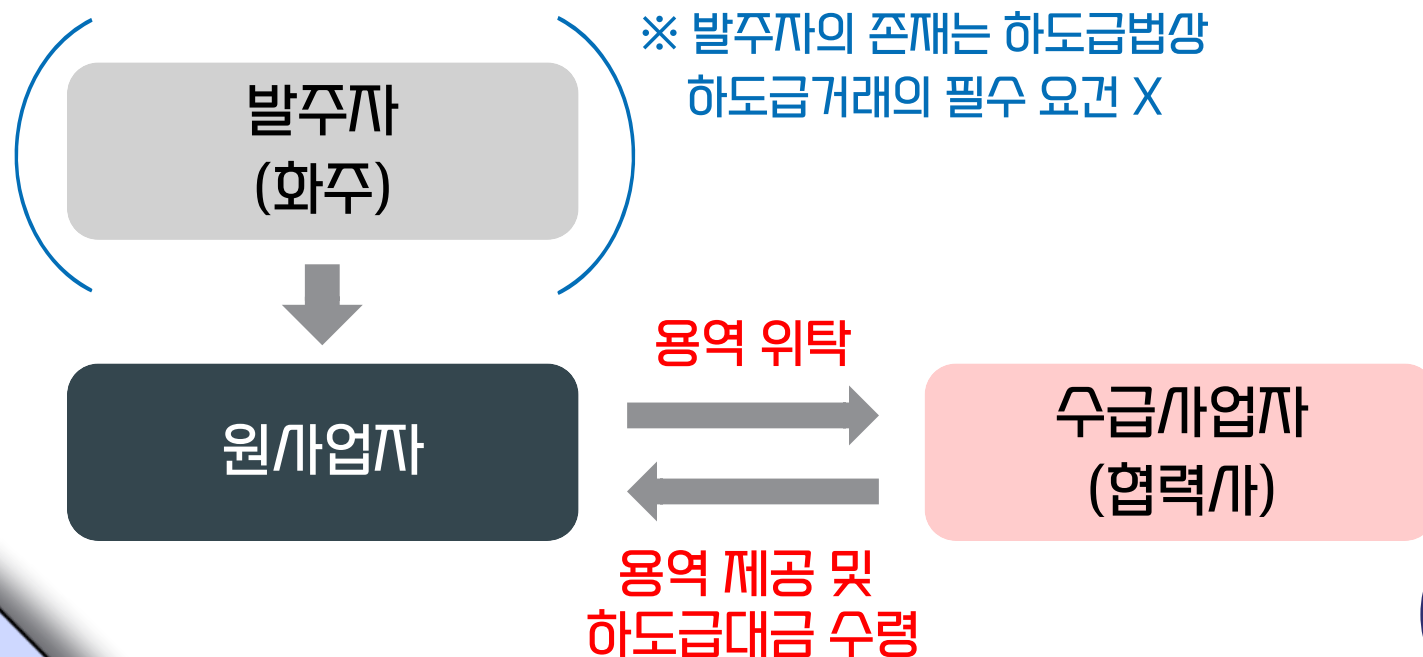
시작하기



# '하도급거래' 란?

##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원사업자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협력사)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자

### 수급사업자(협력사)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용역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주된 업종 별 평균 매출액 이하(운수 및 창고업 사업자 - 800억원)
2.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cf.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제외

(예 : 세방그룹 계열회사 ≠ 중소기업자)

cf. 외부감사법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배(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등)하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별개

# 용역 하도급

##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업'의 예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
화물운송업	화물 운송 위탁	<b>해당</b>
화물운송업	건물 청소 위탁	<b>미해당</b>



# 용역 위탁 대상

## 지식성과물

- ✓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프로그램, 설계 등

## 역무

- ✓ 물류, 화물운송 및 주선, 물류시설 운영, 건물 유지·관리, 청소 등

-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물운송, 보관, 항만하역 등을 위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을 위탁

세방 해당

- 「건축법」상 건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자가 건물의 유지, 보수, 청소를 위탁

# 유의사항



단순 장비 임대차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발생, 일시적 거래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일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주자(화주)와 당사 간의 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방(주)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해 주세요